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13.

발의자 : 김학용 · 전희경 · 오신환
장제원 · 박인숙 · 정운천
김성태 · 이진복 · 하태경
이철우 · 경대수 · 신상진
김무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병원의 장례식장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상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, 군병원의 예산 및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·설비 또는 위생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써 몇몇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차례의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 및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을 준용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및 제21조 신설).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 설치·운영되는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(이하 “장례식장”이라 한다)는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를 준용한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제19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의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

시행 당시 장례식장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군보건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9조의2(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 설치·운영되는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(이하 “장례식장”이라 한다)는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를 준용한다.</p>
<u><신 설></u>	<p>제21조(과태료) ① 제19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의 시설·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</p>